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신 기관의장

람

제1827호 2024. 3. 18.(월)

## 차 례

###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 1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22호선)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9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강 범 석

2024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105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인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인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해관계자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

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3. 제한대상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연번	실·국명 (소속기관명)	부서명	주요 직무 내용	제한 부동산의 범위
1	기획재정국	미래전략과	- 단지, 특구, 지구 등의 지정·조성·개발·투자 유치 등	직무와 관련된 서구 관내 부동산
2	행정안전 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개발 업무 수행	
3	환경국	환경관리과	-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	
4		생태관리과	- 생태하천 복원 및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수행	
5		공원과	- 공원 조성 업무 수행	
6		산림조경과	- 산림의 개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 택지개발 등에 따른 산지전용 및 보전산지 해제 허가(협의) 대상 부동산	
7	경제교통국	경제정책과	- 농지 관리 및 농지전용허가 업무 수행	
8		기업지원과	-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승인 업무 수행	
9	도시주택국	도로과	- 도로 건설공사 업무 수행	
10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 수행	
11		건축과	-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 수행	
12		주택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 수행	
13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 수행	
14		토지정보과	-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 수행	
15	-	검단출장소	- 농지 관리 및 농지전용허가 업무 수행 - 공장설립승인 업무 수행 - 도로 건설공사 업무 수행 -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 수행	

※ 직제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4-62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22호선)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8-54(2018. 4. 3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22호선, 사업명: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외 도로[중로3-122호선] 확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 3.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08-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22호선)
- 명칭: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외

도로[중로3-122호선]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2,074.8m<sup>2</sup>
- 규모: (금회) L=100m, B=2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이창원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217번길 2, 에이동  
2층(가좌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중로	3	122	12 (12-23)	국지 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 도로	-	1997.3.31. (인고제73호)	

## 수용되거나 사용될 토지의 세목

□ 사업명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로3-122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가좌동	408-6	도	10,838.6	1,239.8	인천광역시					
2	가좌동	305-42	공	834	240	인천광역시 서구청					
3	가좌동	502	공	652	25	국 (국토교통부)					
4	가좌동	376-1	공	7,240	306	인천광역시					
5	가좌동	376-3	공	2,500	93	인천광역시 서구청					
6	가좌동	463-23	도	1,006	6	국 (국토교통부)					
7	가좌동	463-17	공	1,835	92	인천광역시 서구청					
8	가좌동	504-7	도	338	4	국 (국토교통부)					
9	가좌동	305-5	공	14,903	69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6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7번길 9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3.1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4-3-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8-2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7번길 9 (가좌동)	20090706	원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8-4	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220번길 4-1 (대곡동)	20130730	도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2,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88-7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115 (경서동)	20090922	도로진행방향에 호두산이 위치하고 있어 호두산로라 명명함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4-3-18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98번길 2 (심곡동)	건물신축	20090922	탁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